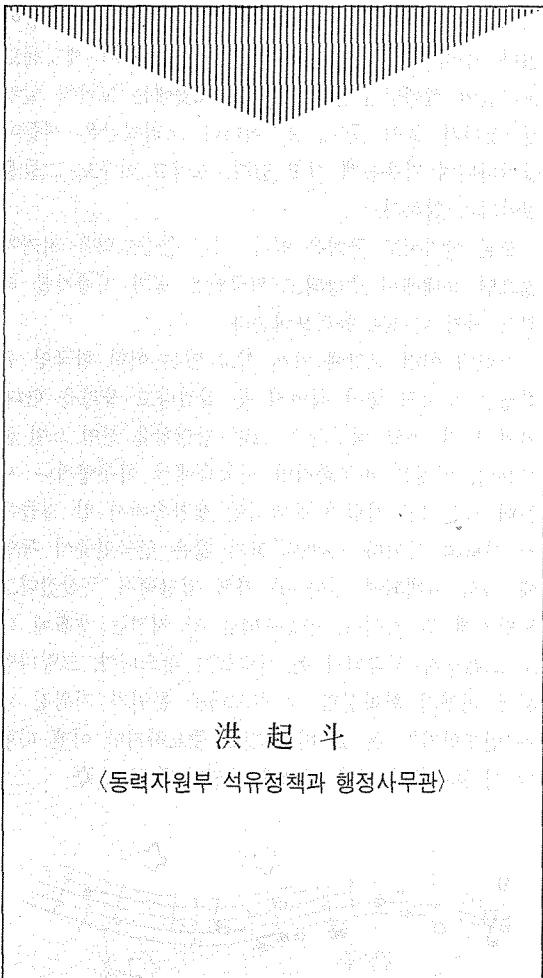


「동력자원부와 상공부의 통폐합 추진！」

어느 날 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으로 이와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논거인 즉 경제의 민간주도를 위한 경제자율화추진에 따라 정부의 역할범위축소가 불가피하고, 이와함께

動資部폐지 구상 재고되어야 한다



에너지자원부문과 공업부문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가 많으므로 동력자원기능과 상공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識者들은, 어떤 사실과 그 배경들을 접했을때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버릇에 길들여졌고, 이런 현상은 대외비 문화가 만들어낸 특징이다. 동력자원부와 상공부 통폐합 보도도 우리의 특징적 분석 능력을 발휘해야 보다 그 윤곽이 확실해지는데,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숨겨져 있지만, 오히려 핵심적인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 국제 자원시장이 다년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80년대초까지의 석유파동같은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성이 희박하니 기능적 통폐합이 가능하다.

- 행정개혁위원회가 무언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 부처는 통폐합시켜야 하는데, 외형적 규모가 타부처에 비해 작은 동력자원부 같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그럼, 대외적으로 알려진 근거나 실질적인 이유들이 과연 타당한가?

우선, 경제자율화에 따라 에너지자원 행정기능축소 주장부터 살펴보자.

에너지자원 분야에 관한한 자연독점, 지역독점 등 독과점 가능성이 큰 만큼 자본주의 하에서도 시장 실패에 의한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제자율화가 공급자의 자율화가 아닌 소비자를 포함한 구성원전부의 자율화를 위해선 에너지자원분야에 있어서의 정부

66

에너지자원정책은
본질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 만큼
조장적 성격의 상공정책과 맥을 같이 할 수 없다.
 공급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소비절약 및 환경보존차원에서의 소비규제를 본질로 하는
 에너지자원정책을 생산·수출 등
외형적 증대를 위한 조장기능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99

기능을 축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자율화를 공급자 또는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 배제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한 경제자율화와 에너지자원 행정기능 축소를 연계하여 거론할 수 없다.

에너지자원부문과 공업부문의 상호연관성 주장을 보자.

'80년대중반 이후 주요에너지 소비부문은 제조업에서 가정·상업 및 수송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부문 정책의 핵심도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원활한 공급이 아니라, 편리하고 저렴한 에너지공급을 통한 복지증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 문제를 산업의 원동력 또는 제품의 원료로 보는 시각을 갖고서는 에너지자원을 생필품 차원에서 요구하는 국민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자원 정책은 본질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 만큼 조장적 성격의 상공정책과 맥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공급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소비절약 및 환경보전 차원에서의 소비규제를 본질로 하는 에너지자원 정책을 생산·수출 등 외형적 증대를 위한 조장 기능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국제자원시장 안정세에 따른 에너지자원 정책의 우선순위 하락 주장은 어떠한가? 아무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 그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괴상한 명칭의 산유국으로부터 날아든 편지 한장에 「내일 오전 0시를 기해 국내유가 59.43% 인상」이란 '80. 1. 29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에 대한 기억을 어떻

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동력자원부 조직 규모가 작으니까 쉽게 통폐합할 수 있다는 논거를 살펴보자.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집착하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 볼때 이 논거야 말로 내심으로 가장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행정개혁을 논함에 있어서의 규모는 기능의 중요성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현행 조직의 크고 작음이 판단의 충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력자원부의 조직규모는 그 출범시의 행정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동력자원부가 총매출액 11조2천억원으로 총GNP의 10.3%에 달하는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 엄청난 기능에 비해 조직이 타부처에 비해 작은 적절적인 이유는 '80년대초 공무원 숙정기에 조직 정비가 이루어진 까닭에 어느 공무원 조직이나 속성으로 내재되어 있는 PARKINSON의 법칙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으며, 저질탄파동, 2차 석유파동 등 신생 부처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제들의 연속적 등장으로 조직 자체가 축소지향적 성향을 띠게 된 것이다.

과연 동력자원분야를 독립된 부처에 담당시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이때까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논거는 객관적으로 받아 들여지기 힘들다. 가장 최근에 그것도 시급히 만들었던 부처를, 또 제 13대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동력자원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새로 만든 에너지자원분야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의에 맞지 않는다. ☐